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11

발의연월일: 2020. 6. 19.

발 의 자 : 안민석 · 정춘숙 · 아수진비

양이원영 · 김민기 · 한준호

김승남 · 한병도 · 고영인

강민정 • 이병훈 • 윤재갑

조오섭 • 박홍근 • 안규백

권인숙 · 김경만 · 김교흥

이상헌 • 송갑석 • 홍성국

양경숙ㆍ이재정ㆍ윤미향

김회재 • 박상혁 • 서동용

박성준 • 이워택 의원

(29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체육계 전·현직 선수의 성폭력·폭력 피해 증언은 우리나라 체육계의 현주소를 보여준 사건이었음. 이러한 체육계의 고질적인 구조와시스템, 그리고 선수와 지도자, 협회의 수직적인 권력관계가 작용하는 폐쇄적인 문화는 오랫동안 지적받아 왔음. 따라서, 이러한 체육계의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 인권에 대한 개인의 인식을 개선하고자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

으로 성폭력·폭력 예방, 학습권 보호 등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여 학생선수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친화적인스포츠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2조의3 신설).

법률 제 호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3(스포츠 분야 인권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 폭력 방지, 학습권 보호 등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학생선수 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을 실시하여 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12조의3(스포츠 분야 인권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
	폭력·폭력 방지, 학습권 보호
	등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
	여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
	자를 대상으로 스포츠 분야 인
	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